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개정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3. 24 ~ 2016. 4. 12)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제5조 2항의 실무분과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반영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 기존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중복 배제로 조례의 간소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